

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

분 야	감사·윤리
기 능	윤리
현행화	2016. 9월

□ 인사규정 결격사유

제10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2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5.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7.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〔개정 2012. 4.3〕
8.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〔신설 2012. 4.3〕
9. 비위채용자로 합격취소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〔신설 2014. 1. 15〕